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면제〉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2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개요	6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4.
3. 회부연월일 : 2024.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 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② ~ ⑧ (생략) ⁴⁾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문 생략)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삭제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개요

취득세란 특정 자산을 유상·무상 취득하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건축물·토지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2.8%·4%이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은 다음 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같은 취득행위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중과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⁵⁾

[개정안 관련 자산의 취득세율]

구분 ※적용지역		표준세율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증축 ※과밀억제권역 - 공장 신·증설 위해 건축물 ⁶⁾ 취득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2.8% ※원시취득 표준	6.8% [= 2.8% + (2% × 2)]
	부지 취득	4% ※농·어·어촌·지역·유상·무상·취득 표준	8% [= 4% + (2% × 2)]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 법인 설립 또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 전입 위해 건축물 취득 ※대도시(=과밀억제권역 - 산업단지) - 공장 신·증설 위해 건축물 취득 ※대도시(유치지역, 공장지역 제외)	2.8%	4.4% [= (2.8% × 3) - (2% × 2)]
	부지 취득	4%	8% [= (4% × 3) - (2% × 2)]
상기 두 조항 동시 해당	건축물 취득	2.8%	8.4% [= 2.8% × 3]
	부지 취득	4%	12% [= 4% × 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5) 참고로,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대한 특례로만 자구가 구성되어 있으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6) 차량·기계장비도 과세대상이나 개정안과 관련이 적어 생략

참고로,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구분하는 3개의 권역 중 하나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정구역은 다음 표와 같음.

[과밀억제권역 현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 공장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려는 것임.

참고로, 다음 표의 관련 하위규정에 따를때 “신성장사업화시설”은 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④ 차세대 방송통신, ⑤ 바이오·헬스, ⑥ 에너지 신·환경, ⑦ 융복합소재, ⑧ 로봇, ⑨ 항공·우주, ⑩ 첨단 소재·부품·장비, ⑪ 탄소중립, ⑫ 방위 산업 관련 총 185개 기술 관련 시설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형 이동수단, ⑦ 바이오의약품 관련 총 54개 기술 관련 시설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관련 하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6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영 별표 7의 기술			사업화 시설 (생략)
구분	분야	신성장· 원천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삭제 <2023. 6. 7.>		
	나. 전기 구 동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4) 초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2. 지능정 보	가.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기술	
	마. 착용형스 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2)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5.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 이스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자. 스마트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가. 지능형 반도체· 센서	1)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2)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3)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4)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5)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6)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제조 기술	
		7)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나. 반도체 소재· 부품	1)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제조기술	
		2) 원자층증착법(ALD) 및 화학증착법(CVD)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5) 반도체용 기관 개발 및 제조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7)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8)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9)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7) 친환경 QD (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제조기술	
	마. AR 디바 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 및 6세대 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나. UHD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7. 바이오 ·헬스	가. 바이오· 화학 물의 약	1) 삭제 <2023. 8. 29.>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8. 에너지 신·환경	나. 의료기기·헬스케어	3) 삭제 <2023. 8. 29.>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6) 삭제 <2023. 8. 29.>	
		7) 삭제 <2023. 8. 29.>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다. 바이오농수산물·식품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	
		1) 비가열 및 고온·고압 가공처리 기술	
		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3) 신물질 종자 개발기술 및 종자 가공처리 기술	
	라. 바이오화학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6)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기술	
		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우드리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3)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4)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5)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나. 발전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4)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5) 친환경·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	
		6) 대형 원자력발전소 제조기술	
		7)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4)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5) 폐플라스틱 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4)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8)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나. 초경량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다. 하이퍼플라스틱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마. 특수강	1) 고정정 스테인레스계 무게목강관·봉강 제조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바. 기능성탄성·접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작소재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사. 희소금속·핵심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2) 고순도 폴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과 제조 기술 3) 중회도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4) 평판 디스플레이(FPD) 이송로봇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4) 원격현실(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1)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2) 웨어러블 로봇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라. 로봇 공통		
11. 항공·우주	가. 무인인동체	1)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2)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3)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나. 우주	위성탑재체 부품품 개발기술	
12. 첨단소재·부품·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3)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제조기술	
	나. 첨단 부품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다. 첨단 장비	4) 첨단 터닝센터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제조 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제조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8) 방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1) 삭제 <2023. 6. 7.> 2) 부생수소 생산기술	
		3) 삭제 <2023. 6. 7.>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5) 삭제 <2024. 3. 22.> 6) 삭제 <2024. 3. 22.> 7) 삭제 <2023. 6. 7.> 8) 삭제 <2023. 6. 7.>	
		9)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10) 암모니아 발전 기술	
13. 탄소중립	가.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나. 수소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기술 2) 삭제 <2023. 6. 7.>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14. 방위산업	라. 산업공정	4)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 및 변환기 제조기술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10)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11)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12)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13)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라. 산업공정	1) 삭제 <2024. 3. 22.>	
		2)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10)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12) 해상(FSRU) 및 육상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기술	
		13)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마. 에너지효율·수송	1)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2) 지능형 검침인프라 설계·제조 기술	
		3)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4) 친환경 굴착기 개발 기술	
		5)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7)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8)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14. 방위산업	가. 방산장비	1) 추진체계 기술	
		2) 군사위성체계 기술	
	나.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관련)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생략)
분야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다.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라.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마.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아.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차.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카.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타.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파.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하.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거.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너.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더.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러.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머.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버.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나.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다.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마.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사.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아.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자.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3. 백신	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다.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나.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5. 수소	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나.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다.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라.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마.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바.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사. 수소 가스터빈(혼소·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아. 수소환원제철 기술	
6. 미래형 이동수단	자.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나.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7. 바이오의약품	다.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가.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라.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 기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년대 들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신기술·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금 세액공제(사업소득세·법인세) 제도를 각각 2021년·2022년 신설하였는데,

해당 투자금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개정안과 같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면 사업자의 시설 투자시 입지 선택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신기술·신산업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1973년 도입된 후 50년 이상 유지된 제도인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제도 연혁]

개정일	중과요건	중과지역	중과세율
1973.3.12.	- 공장신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대도시 (서울·부산·대구)	표준세율 ×5배
1976.12.31.	- 공장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대도시 (서울·부산·대구)	
1978.12.30.	- 공장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대도시 (수도권·부산·대구)	
1991.12.14.	- 공장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대도시 (수도권·부산·대구)	
	-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전촉진·제한정비권역	
1994.12.22.	- 공장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대도시 (수도권·부산·대구)	표준세율 ×3배
	-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1998.12.31	- 공장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 ×3배
2010.3.31.	- 공장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 +4%p

주) 주요 개정만 정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하여도 해당 목적으로 기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정책목적이 상이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 표와 같이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다수 제안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제22대 국회 신성장·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 세액공제 확대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대상특례	확대내용
2201233	이상식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 대상 투자범위 확대
2201361	김태년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2201484	박수영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 이월기간 연장 - 공제율 확대
2201951	정성호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2202083	이병진의원	신성장사업화시설	-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확대) 연장
2202173	이병진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2202186	최은석의원	신성장사업화시설	-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확대) 연장
2203009	정진욱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 대상 투자범위 확대
2203522	정부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2204780	정성호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 이월기간 연장
2204944	천하람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 대상 투자범위 확대 - 공제 이월기간 연장
2204975	정태호의원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2204983	신영대의원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2205230	김남희의원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 대상 투자범위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확대) 연장
2205566	이재관의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공제율 확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금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말 일몰된 예정으로서 이를 연장하기 위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음 표와 같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
이므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여부도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⁷⁾

[제22대 국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 세액공제 연장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연장기간
2200067	박충권의원	6년(~ 2030년말)
2200578	김성원의원	10년(~ 2034년말)
2201233	이상식의원	6년(~ 2030년말)
2201361	김태년의원	10년(~ 2034년말)
2201431	김종양의원	10년(~ 2034년말)
2201484	박수영의원	10년(~ 2034년말)
2201951	정성호의원	6년(~ 2030년말)
2201980	조지연의원	4년(~ 2028년말)
2202125	이병진의원	10년(~ 2034년말)
2203522	정부	3년(~ 2027년말)
2204780	정성호의원	10년(~ 2034년말)
2204825	허성무의원	3년(~ 2027년말)
2204944	천하람의원	2년(~ 2026년말)
2204975	정태호의원	3년(~ 2027년말)
2204983	신영대의원	3년(~ 2027년말)
2205230	김남희의원	6년(~ 2030년말)
2205485	조인철의원	6년(~ 2030년말)
2205525	엄태영의원	3년(~ 2027년말)
2205566	이재관의원	일몰폐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연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 신설의 필요조건은 아니나, 전자의 일몰연장은 해당 시설의 투자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그 밖에 ① 개정안의 자구 중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제외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보이고,

② 개정안은 부칙으로 시행일(2025년 1월 1일)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과세는 과세물건 취득(「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 → 취득세 신고 → 납부의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취득세 관련 규정 개정시의 부칙 입법례⁸⁾에 따라 “이 법 시행

8) 「법률 제1747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상충될뿐 아니라 현재도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는 중과가 배제되고 있어 추가적인 특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3